

계좌간자동이체(구.외환은행) 신.구약관 비교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1조 ~ 6조 (생략) 신설</p>	<p>제1조 ~ 6조 (좌동) 제7조 계좌이동서비스 ① 계좌간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,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용합니다.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 자동이체 등록 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,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. ③ 고객은 은행지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④ 고객이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,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.</p>	<p>계좌이동서비스 신설</p>
<p>신설</p>	<p>제8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, 전자우편 중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,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통지합니다. 다만, 기존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고객은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 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,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</p>	<p>약관의 변경 신설</p>

<p>제7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입출금이자자유로운예금약관,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한다.</p>	<p>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</p> <p>④ 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9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, 입출금이자자유로운예금약관(구 외환은행),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.</p>	
--	---	--